

입법의견조사 97-1

입법의견 동향분석

- 주요쟁점 : 국가안전기획부법 -

1997. 4.

研究者 : 宋永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입법의견 동향분석

| | |
|--|----|
| I. 조사목적 및 현황 | 7 |
| II. 주요쟁점 : 국가안전기획부법 | 10 |
| III. 분야별 입법의견동향(1996.12.1~1997.2.28) | 17 |
| ◎ 헌정 | 17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 통일·외교 | 20 |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관련 입법의견 | |
| ◎ 문화·공보 | 20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의견 | |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
|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
| 『예술의전당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 『통합방송법(가칭)』 제정의견 | |
| ◎ 교육·학술 | 23 |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

◎ 노동 24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의견
- 『근로자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견
- 『외국인근로자고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재정·경제 35

- 강제성 채권제도관련 입법의견
- 『규제개혁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금융개혁관련 입법의견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입법의견
- 『기업부담금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은행법시행령』 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토지세제관련 입법의견

◎ 농림·해양 40

- 『선원법』 개정의견
- 『어장정비정화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어촌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해양안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교통 42

- 『그린벨트보상법(가칭)』 제정의견

가상대학활성화관련 입법의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환경 44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보건·복지 45

『국민건강보호법(가칭)』 제정의견

복지시설설립관련 입법의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보장에관한법(가칭)』 제정의견

◎ 법원·법무 46

『검찰청법』 개정의견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형법』관련 입법의견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참고자료 1〉 노동관계법 여·야 합의안 51

(97년 3월13일 공포)

〈참고자료 2〉 1997년 정부 입법계획 65

〈주요항목색인〉 77

I. 조사목적 및 현황

1. 조사의 목적과 분류방법

입법의견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법령의 형태 즉,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반영 되기를 원하거나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입법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특히 일반국민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영역에서 입법의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 전문가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의 입법관계자들은 특정한 분야의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우선 이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의 입법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즉시 파악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책무를 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의 불비 및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며, 법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의견은 입법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느끼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견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입법관계자인 정부나 국회에 국민의 입법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내지 입법과정에 기여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조사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문·방송·통신·출판물 등의 매체, 관련 학회의 세미나·시민운동단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의견, 정부 부처·정당·각종 민간단체의 정

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입법의견을 수집·분석한다.

입법의견은 조사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는 바, 먼저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야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시 입법의 공백 내지 불비에 따른 법령제정의견과 법령과 현실의 부조화에 따른 법령개정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간행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의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입법의견을 분류한다.

(입법의견 분류기준표)

| 분야 |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해당항목 |
|-----------|--|
| 憲政 |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
| 統一·外交 | 제15권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
| 國防 |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
| 一般行政 | 제3권4행정일반 |
| 內務·地方行政 |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
| 文化體育·公報 | 제18권17문화·공보 |
| 教育·學術 |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6교육·학술(2) |
| 勞動 |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
| 財政·經濟 |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
| 通商·產業 |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
| 農林·海洋 |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
| 建設·交通 |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I)권35수자원·토지·건설업(1), 제36(II)권35수자원·토지·건설업(2),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
| 科學技術·情報通信 | 제19권18과학·기술, 제46권43체신 |
| 環境 | 제39(I)권39환경(1), 제39(II)권39환경(2) |
| 保健·福祉 | 제37(I)권36보건·의사(1), 제37(II)권36보건·의사(2), 제38(I)권37약사, 38사회복지(1), 제38(II)권38사회복지(2) |
| 法院·法務 |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

2. 입법의견 현황

지난해 국회 제181회 정기회로부터 올해 3월 18일 폐회한 제183회 임시회까지 총 178건의 법률이 가결 처리되어 지난 한해 본조사에 접수된 289건의 입법 의견의 상당부분이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각종 언론매체 등에 공표되거나 제기된 각계 각종의 입법의견 총 41 건이 접수되었고, 동 기간동안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의 입법의견 중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 입법의견을 주요쟁점으로 다루었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위 분류기준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현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 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 현황

| 분 야 | 건 수 | 제정의견 | 개정의견 |
|---------------|-----|------|------|
| ○ 현 정 | 1 | · | 1 |
| ○ 통일 · 외교 | 1 | · | 1 |
| ○ 국 방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내무 · 지방행정 | · | · | · |
| ○ 문화 · 공보 | 5 | 2 | 3 |
| ○ 교육 · 학술 | 1 | · | 1 |
| ○ 노 동 | 6 | 2 | 4 |
| ○ 재정 · 경제 | 9 | 2 | 7 |
| ○ 통상 · 산업 | · | · | · |
| ○ 농림 · 해양 | 5 | 3 | 2 |
| ○ 건설 · 교통 | 1 | 1 | · |
| ○ 과학기술 · 정보통신 | 2 | · | 2 |
| ○ 환 경 | 1 | 1 | · |
| ○ 보건 · 복지 | 4 | 2 | 2 |
| ○ 법원 · 법무 | 5 | 1 | 7 |
| 총 건 수 | 41 | 14 | 27 |

II. 주요쟁점 : 국가안전기획부법

朴英道 *

1. 머리말

국가안전기획부법(이하 “안기부법”이라 한다)은 1993년도의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여야합의로 안기부직원의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행위의 금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국회통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중 제7조(찬양·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의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와 같은 개정을 하게된 입법취지는 정보 정치와 공작정치의 폐단을 없애고 선전하고 자유로운 정당정치제도를 확립하며, 안기부의 불법적 수사행위에 의하여 유린되고 있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르러 일련의 간첩사건 등을 거치면서 국가안보태세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자 국가안보의 위협요소에 대한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기부의 대공방어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기부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996년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996년 12월 31일 법률제5252호로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하는 안기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안의 통과후 야당측은 동법의 개정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등 현재까지 여야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안기부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법의 개정경과를 살펴보고, 동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 안기부법의 개정경과

| 개정년월일(공포번호) | 주 요 내 용 |
|---------------------------|--|
| 1980.12.31 (법률 제3313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함. - 중앙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자체수사권을 인정하였던 것을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만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여 자체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함. - 중앙정보부의 직무중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 · 감독"을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으로 함. - 정보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정보위원회"를 "정보조정협의회"로 하고,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함. |
| 1981.12.31 (법률 제349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 지명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
| 1987.12.4 (법률 제3993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인 군법회의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기획부는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 · 감독을 받도록 함. -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국내보안정보업무에 "방첩 · 對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함. -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중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삭제함.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은 존치하되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하도록 함. - 국가안전기획부는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 직할시 ·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 | |
|---------------------------|--|
| 1994.1.5 (법률 제4708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직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함. - 국가안전기획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 한 세부자료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정보위원회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함. - 부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전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조정협의회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벌칙을 두도록 함. |
| 1996.12.31 (법률 제525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에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추가함. |

3. 쟁점사항

안기부법의 문제와 관련한 쟁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의 정세관의 차이, 또한 그 정세관의 차이로 인한 대응논리와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의 개정을 둘러싼 각종 논의도 입법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인권보장의 강화라는 두 가지의 쟁점에 대한 상호 조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법적 문제를 도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하튼 안기부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기부관련법제의 정비문제

현행법상 안기부와 관련된 법제로는 「국가안전기획부법」과 안기부직원들의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있다. 또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서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국가정보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시행규칙」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현행 안기부관련법제인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통합한 「통합안기부법(가칭)」의 제정을 제안하는 견해가 있다. 즉 「안기부법의 입법목적은 안기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것이며, 그 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칡넝쿨처럼 뒤얽혀있다. 안기부법은 제9조와 제11조에서 정치관여금지와 직권남용금지를 정하면서 따로 제18조 정치관여죄, 제19조 직권남용죄를 둘으로써 동어반복을 넘어 중언부언한 느낌이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안기부직원을 수사하려면 미리 안기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안기부직원법으로 넘어가 있다(제23조). 인사에 관해서도 직급에 따라 고위직은 안기부법, 그 밑은 안기부직원법으로 나뉘어 있다. 또 안기부의 보안업무규정에도 제43조 권한위임처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할 내용이 눈에 띠다.」라고 하여 이러한 혼선과 난맥을 정리하기 위하여 「통합안기부법(가칭)」을 제안한다(홍정기, 통합안기부법, 문화일보 1997.1.10).

(2) 안기부의 수사권에 관한 문제

안기부법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중 제7조(찬양·고무·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제작·반포·소지 등)와 제10조(불고지)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 문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법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국내외 정세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가) 수사권인정을 긍정하는 견해

- 「현재 우리의 대공수사체계는 하부조직이 없는 검찰, 정예화된 대공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 사법적 권한을 박탈당한 안기부로 3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안기부가 인지한 국보법 제7조 위반사범은 대부분 검찰·경찰로 이첩하고 있지만 외부로 드러난 사건수사에만 치중하고 배후지령이나 사주세력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간첩혐의를 규명하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보법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사권배제가 국민들에게는 좌경사범전체에 대해 안기부가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공신고 기피경향이 증가하여 대공첩보수집에 지장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의 출범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의식도 높아졌다. 여기에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설치되어 안기부업무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두고 곧바로 권력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조웅규, 「안기부에 대공수사권줘야 한다」, 헌정 1996.12., 78~80면).

- 「안기부가 수사권을 제한받은 이래 공안수사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은 하부 활동조직이 없고 경찰은 인원수에 비해 정예화된 요원이 적으며 군기무사는 군대조직인 만큼 민간인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성을 노출할 수 밖에 없다. 검경과 기무사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려면 당연히 안기부의 수사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해외안전총국, 미국의 연방수사국, 일본의 공안조사청같이 서방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가전복, 테러 등 반국가범죄나 공안사범을 담당하는 특수기관들은 예외없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적대관계하의 분단국가인 우리가 유독 안기부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정형근, 「안기부 대공수사권회복의 당위성」, 시민과 변호사 1996.11., 70~74면).
- 「대공수사는 사명감을 갖고 사기가 충천해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큰 사건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수사상 단서는 찬양·고무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안기부에 대공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안기부를 없애는 것과 똑같

은 것이다」(오제도,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 대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 1997. 3.12.).

(나) 수사권인정을 부정하는 견해

-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남용의 여지가 많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오히려 위 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로 부터 박탈하였다고 하여 범죄신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줄어들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불고지죄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안기부가 수사를 못한다는 것일 뿐 경찰이나 검찰에서 얼마든지 불고지죄로 수사 할 수 있는데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였다하여 간첩신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장주영, 「최근 안기부법 개정논의에 대한 반론」, 시민과 변호사 1996.11., 86~91면).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가 언제나 간첩수사의 초동단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간첩검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기부의 판단력이 부족하였다는 실증적인 반론이다. ……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상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단지 두가지 규정에 대한 수사권에서 배제되었을 뿐이다. 대공수사력에 경찰 및 검찰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조직적으로 보강하여야 할 일이지 그 수사권을 안기부에 회귀시킬 이유가 될 수 없다. ……안기부는 국외정보수집 및 대공, 대정부전복, 대테러, 방첩등의 업무중에서도 외부로부터 침투한 간첩의 적발에 힘쓰고 국내인들의 이념적 행동이 찬양, 고무등 죄에 해당되는 여부는 경찰 및 검찰조직에 맡겨두는 것이 21세기로 나아가는 선진 정보기관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박연철, 「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논의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1996.12., 8~18면).
- 「안기부의 권한중 가장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

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역시 안기부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겨 일원화하는 것이 수사효율을 위해서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나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안기부직원들의 직권남용죄 및 정치관여죄 수사권도 안기부가 갖는 대신 검찰에 줘야 할 것이다.」(곽노현, 「안기부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안기부법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1997.2.27.)

(3) 안기부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에 관한 문제

(가) 동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 「과거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수사는 국보법 제7조 위반혐의를 단서로 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하여 왔으나, 1993.12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정통과로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죄)는 개정과 동시에 수사권이 폐지되고(94.1.4), 간첩수사의 기본인 제7조3항(이적단체구성등) 및 제5항(이적표현물제작등)에 대한 수사권 역시 95.1.5 폐지되었으며, 더구나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라는 해괴한 규정의 신설로 무전기·난수표등 직접증거가 없는 한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해 절름발이식 수사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대공수사역량의 약화를 초래, 결국 적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한꼴이 된 것이다.」(정형근,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필요성」, *한국일보* 1996.9.7.).

(나) 동조의 존속을 주장하는 견해

- 「안기부법 제11조의 구체적 내용이라는 것이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감금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 및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권 및 변호인의 의뢰를 받을 권리 등 일반형사법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인 것이다. ……그런 것을 위반한 안기부직원을 처벌하겠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은 안기부에게 특권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인권보장과 다른 형사소송법상의 형평성에 비추어 이 조항을 폐지해서는 안될 것이라 본다.」(조찬형, 「안기부 수사권확대 꼭 필요한가」, *국회보* 1996.11., 83~85면).

III. 분야별 입법의견동향

(1996.12.1~1997.2.28)

현 정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개정의견

■ 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년 1월 13일 법률 5,261호로 공포)은 △무기명 기탁이 가능한 소위 정액영수증을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후원회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액영수증 표시금액도 1만원권, 100만 원권 등 2종을 추가(제7조제5항)하여 정치인 스스로 겸은돈의 유입가능성을 확대하였고,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후원회제도와 관련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은 정당에 기부하는 경로와 이에 대한 처벌 조항만을 두고, 개인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된 뇌물성 정치자금을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바, 공식적·비공식적 정치자금의 파행적 운영으로 야기되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요망됨.

〈정치자금실명제 실시〉

정치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위하여 '정치자금실명제'를 도입하여, ①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②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③개인 이외에 정당의 중앙당, 지구당 등도 후원금, 일체의 정당

운용 자금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중앙선관위 주관하에 가칭 '정치자금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④컴퓨터 통신망으로 전산화하여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 합리적인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도록 함.

〈정액영수증제 폐지〉

지난해 무기명 정액영수증제(쿠폰제)의 확대를 내용으로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는 정치자금실명제에 역행하는 것인 바, 이를 폐지함.

〈기탁금제도 개선〉

정치자금의 조달·배분에 있어서 균등화 추구를 위하여, 여당이 독식하는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 비지정기탁제를 확대하며, 다양한 이익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에도 정치 참여의 형식으로 허용하여야 함.

〈후원회제도 개선〉

정당이 당원(member) 중심에서 지지자(supporter) 중심으로 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후원회 조직을 모든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개방하고, 후원회제도가 음성적인 자금의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입내역의 단순한 총액보고에서 인적 사항이 명기된 구체적인 후원회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액수의 과다, 납세자의 여론 무시, 배분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책정과 분배에 대한 대안으로 연말 세금정산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괄공제(Check-Off)제도를 도입하면, 유권자의 정치참여 의식 제고와 이를 통한 정치인이나 정당 정치에 대한 간접평가가 가능함.

국고보조금의 지급방법도 개선되어야 하는 바, 현재 국회의원 선거결과나 의석수,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에서 대통령 선거시 득표 결과, 당원의 당비 납부율과도 연계하여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고려함.

〈당비제도 개선〉

간부에 의한 과도한 당비 부담이 당의 사당화 우려를 낳는 바, 자율적인 당비납부를 위하여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당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벌칙조항 강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개정과 함께 『정당법』, 『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실사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 부실 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권 등의 권한을 주어 정치자금 관리·감독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김영래 아주대 교수, 「한보사태를 통해 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97.2.14., 경제정의 97년 봄호, 249~262면 참조).

-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야당의 경우 정치자금모금에

한계가 있는 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은 공개하되 소액후 원금은 비공개 하도록 함(유선호 국민회의 의원, 「한보사태를 통해 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 필요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97.2.14., 동아 97.2.22, 4면).

※ 「입법의견조사」 제4호(23면) · 제6호(68면) · 제8호(66~67면) · 제9호(86면) · 제11호(69~70면) · 제12호(69~70면) · 제13호(46~47면) · 제94-1호(48~49면) · 제94-4호(76면) · 제94-5호(87~88면) · 제95-2호(81~82면) · 제95-4호(57~58면) · 제96-1호(16면) · 제96-2호(17~18면) 참조

통일 · 외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관련
입법의견

■ 효율적인 탈북자 지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탈북자 처리방식이 귀순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귀순주민에게 자생력을 부여하고, 사회화 교육을 통하여 일반시민으로서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통일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해외유랑탈북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법령에 배려조항으로 삽입하고, 상당기간동안 실업급여, 보험, 사회부조의 특별대우로 자생능력을 가질 때까지 보호하도록 함(민병천 서경대총장, 조선 97.1. 1, 12면).

※ 「입법의견조사」 제96-2호(22면) · 제96-3호(16면) 참조

문화 · 공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의견

■ 민간박물관 지원

- ①대학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이 정부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문

화체육부장관 직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 흥위원회'를 설치함. ②『국립박물관및국립미술관설치령(가칭)』을 마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으로 지정하고, ③현행 학예사시험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7급 공무원시험과 유사하여 전문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전문학예사(큐레이터)제도'를 도입하고, 전공분야도 역사민속, 고고미술, 자연산업, 보존과학 등 6개로 세분화하여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학예사자격증을 주도록 함(유원적 목포대 박물관장, 경향 97.1.11, 15면).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을 정치자금처럼 세금을 공제하여 주도록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신탁근 온양민속박물관장, 서울, 97.1.6, 11면).

※ 「입법의견조사」 제3호(56~57면) 참조

『문화재보호법』 개정 의견

■ 문화재보호관련제도의 보강

개발논리에 밀려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은 문화재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강하고, 개발에 따른 공사시행 이전에 문화재 매장여부를 가리는 사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며, 전국적인 지표조사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부존을 미리 진단하여 문화재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함(서울신문 기획·연재, 97.1.7, 13면).

- ※ 「입법의견조사」 제8호(82면) · 제11호(84~85면) · 제12호(80면)
· 제13호(63면) · 제94-3호(95면) · 제96-2호(31면) · 제96-3호(28면) 참조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영화의 등급외 판정

- 『영화진흥법』의 '등급외 영화 전용관 설치' 규정의 조항신설

과 관련하여, 등급의 판정을 받고 상영된 영화가 차후에 『형법』,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어느 법에서는 상영을 허용하고 다른 법에서는 처벌한다는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이러한 법 체계상의 불일치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함(문화체육부, 국민 97.2.21, 15면).

- ① 궁극적으로 영화의 실정법 위반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인 바,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영화제작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② 전용관을 두지 않은 채 등급외·등급 보류 판정을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임(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 국민, 97.2.21, 15면).

※ 「입법의견조사」 제3호(53~54면) · 제8호(84면) · 제95-2호(92~93면) 참조

『예술의전당 특별법(가칭)』 제정 의견

■ 경영상의 자율

예술의전당의 자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회사채이면서도 정부 산하로 소속됨에 따른 경영상 결정권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술의전당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함(이상만 음악평론가, 예술의전당 법인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발표, 경향 97.2.15, 14면).

※ 「입법의견조사」 제96-3호(29면) 참조

『통합방송법(가칭)』 제정 의견

■ 방송법안의 표류

『통합방송법(가칭)』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① 공중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의 통합방송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규제작업, ② 방송위원회의 방송업자 선정관여등 방송 인허가과정상 공정성 제도의 시행, ③ 케이블TV의 영세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수사업

자(MSO)의 도입 등이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법안의 국회통과가 요망됨(문화일보 기획·연재 97.1.27, 21면).

■ 방송위원회의 권한

상정된 법안은 방송사의 인허가 및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어 방송위원회 기능강화와 관련하여서 무의미한 규정이 될 뿐이고, 문제프로그램에 대한 중지 및 중단권은 『현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문화일보 기획·연재 97.1.27, 21면).

■ 위성방송 참여범위

- 대기업과 언론사의 무제한적인 위성방송사업의 참여가 방송의 지배 또는 여론의 과점이라는 역기능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만을 참여시키는 경우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부작용은 자본과 제작의 분리나 소유의 제한과 같이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음(문화일보 기획·연재 97.1.4, 19면).
- 현재의 방송체제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바, 대기업이나 신문사의 방송사업참여시 방송의 공정성이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질 것임(문화일보 기획·연재 97.1.27, 21면).

교육 · 학술

교육개혁관련

■ 교육당사자의 참여방안 마련 등

입법의견

법제개혁이 강자인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자체가 무산 혹은 공동화되고, 교육현장의 이해와 『교육법』 인식의 부족으

로 개혁내용상의 한계가 있는 바, ①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의 권리보장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재의 획일적인 명령지휘체계의 의사결정구조가 조정되어야 하고, ②『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구성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당사자의 학교운영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③대학자치제의 확립을 위하여 총장의 직속 집행기구 성격을 지니는 교무회의를 교수들 직선의 대표로 구성되는 교수평의회에서 견제하도록 하는 등 교육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신현직, 「교육법제개혁과 학교의사 결정구조의 문제」, 법정신문 96.12.23, 8면).

※ 「입법의견조사」 제94-2호(84면) · 제94-5호(96~98면) · 제95-1호(85면) · 제95-2호(89~90면) · 제95-3호(87~88면) 참조

노 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의견

■ 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 등
①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조기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90일이내에 10인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을 채용하면 채용된 실직자 임금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1년간 지원하는 '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②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새로운 직장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과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지원하며, ③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재고용보장규정을 두고 퇴직 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는 월 30만원의 일정액을 지원 받는 '여성재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여성 고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④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담당자가 실업급여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직시키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조기재취직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함(노동부, 경향 97.2.2, 21면).

※ 「입법의견조사」 제94-2호(83~84면) · 제94-3호(91~92면) · 제94-4호(78~79면) · 제96-1호(27면) 참조

『근로자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도산기업 체불 대체지급

기업도산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의 한계시 체불임금을 대체지급하도록 『근로자지원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왜곡된 임금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을 5개로 국한하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며 시간급을 월급제로 전환함.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지양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규모승인대상을 근로자 5백명이하 사업장은 2~6명이상, 5백~1만명 사업장은 10~50명 이상, 1만명초과 사업장은 1백명 이상으로 함.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0.1% 범위내로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출연하여 퇴직일 6개월전부터 퇴직일까지의 체불임금중 80%를 대신 지급하도록 함(동아일보 해설, 97.1.10, 2면).

『남녀고용평

등법』 개정

의견

■ 출산 · 휴직비용 사회분담 추진

①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한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육아휴직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②신인사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에게 각종 불이익을 야기한 바, 이에 관련한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노동부령으로 삽입하도록 함(신한국당, 중앙 97.1.21, 2면).

※ 「입법의견조사」 제95-3호(88~89면) · 제94-6호(86면) · 제96-3호(35~36면) 참조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논의 경과

정부가 지난해 OECD(경제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고,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발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관련한 상당부분의 노사합의를 도출하였음. 주요 미합의 쟁점조항에 대하여 이른바 공익위원회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조항이 노동법의 개혁이라는 원칙에서 일탈·수정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여당이 단독·변칙 처리하면서(96. 12. 26.)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를 야기하였음. 각계와 여론의 재개정 논의 가운데 여야 영수회담 → 야당 단일안 마련 → 여야 합의안 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노동관계법은 폐지·제정의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97.3.13.) 하였는 바, 이하는 96년 12월 노동관계법의 정기국회 처리이후의 입법의견을 정리한 것임.

■ 정기국회 통과 법률(96년 12월 26일) 관련

〈정리해고제〉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조와 근로자 대표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사용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규정일 뿐임(이광택 박사, 산업사회연구소).

〈변형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관리비 등의 사회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은 기본급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당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서는, 기존의 임금수준 혹은 생활수준의 저

하를 초래할 것이고, 노조의 결성률이 15%도 안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악용의 소지가 있는 바, 국제적 기준에 준하도록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일 노동 시간에 관하여 변형근로의 허용한도를 규정하여야 함(김유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노조전임자 임금지불〉

노동조합 체제가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중소 영세 사업장으로 재정적 독립이 어려운 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실상의 노동조합 활동을 어렵게 할 것임(강수돌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대체근로의 허용〉

대체근로의 허용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파업'이라는 집단 행위의 효과를 무력화하여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것임(강수돌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 'MBC PD수첩' 97.1.28. 방영분 참조

〈민주노총의 독소조항 분석〉

①경영상 이유해고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제한요건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②변형근로시간제도는 시간외 수당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최고 6.4%의 임금삭감 효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임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③쟁의행위기간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면 파업의 효과가 없어지는 바, 파업권이 무의미해진 노동조합은 무력화할 것임, ④교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이며, ⑤제3자 개입 금지조항과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연대파업을 불가능하게 하여 파업의 효과를 감

소시키고, ⑥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 무임금은 실질임금의 감소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임(민주노총, 동아일보해설 97.1.21, 2면).

〈야당 단일안〉

①복수노조는 우선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5년 동안 유예하며, ②노조 전임자 임금은 현행대로 지급하되 5년 뒤부터는 지급을 금지하고, ③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전면 삭제하고, ④공익사업의 범위에서는 은행, 방송, 조폐사업 등을 제외하며, 철도·시내버스 운송·의료·은행사업을 직권중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⑤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는 사업장 내 근로자로 한정함(문화일보 해설 97.2.17, 12면).

■ 노동관계법 3당합의 요지(97년 3월 10일)

①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②노동조합의 전전한 재정자립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노조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던 임금을 감축하면서 노조에게 지원할 경우와 근로자가 적립하는 재원 등에 조세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③쟁의조정과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의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였는 바, 관련규정에서 장관급으로 개정 함. ④노동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하여 지방화시대의 관할지역내 노사관계 안정, 발전을 위하여 자체단체가 전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지원함.

<합의사항>

- ※ 여야합의안으로 통과된 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임.
- ※ 법률명 미표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임

| 쟁점사항 | 관련조항 | 합의내용 |
|---|-----------|--|
| 1)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 제2조제3호 | '사회운동' 삭제 |
| 2) 노조임원겸직 금지 | 제23조제3항 | 삭제 |
| 3) 쟁의조정기간 | 제54조제1·2항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1차례 연장가능) |
| 4) 연차유급휴가 30일 상한제 | 근로기준법 | 삭제 |
| 5) 노동관계당사자 정의규정 | 제2조제4호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로 함 |
| 6) 임시총회 소집 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의결'로 통일 | 제18조제3항 | 임시총회 소집 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의결'로 통일 |

| 쟁점사항 | 관련조항 | 합의내용 |
|--------------------------------|-----------------------|---|
| 7)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제38조 제3항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통제하여야 한다'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로 변경 |
| 8) 서류보존년수 단축 | 제14조 제2항 | 노조서류관련 '5년간 보존'을 '3년간 보존'으로 함 |
| 9)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명시 | 제18조 제4항 | 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의결 요청 |
| 10) 행정관청 자료제출 | 제27조 별칙 제96조 | 행정관청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
| 11) 복수노조 | 부칙 제6조 제1항 | 상급단체는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 |
| 12) 위법한 단체 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 제31조 제3항 | 현행유지 |
| 13) 대체근로 | 제43조 제1,2항 별칙 제91조 | 사업내 허용 및 신규 하도급 금지 |
| 14) 무노동무임금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문제) | 제44조 별칙 제90조 |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쟁점사항 | 관련조항 | 합의내용 |
|---------------------------|------------------------|--|
| | | 제90조(별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5) 변형(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42조의2 | - 2주단위 48시간, 1개월 단위 56시간제를 수용하되 - 업무단위 또는 부분적으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삭제 - 1일 최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정 |
| 16) 정리해고(고용조정)제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 - 노개위 공익안으로 채택 - 2년간 시행유예 - 정리해고 → [고용조정]용어 사용 |
| 17)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 | 제71조제2항 부칙 제2조 | - 시내버스운송사업과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사업은 2000년 12월 말 까지만 적용 - 병원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함 |
| 18)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 제24조제2항 제81조제4호 부칙 제6조 | - 지급금지 5년간 유예 - 노조재정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 합의안에 포함 |
| 19)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 | 제2조제3호 라목 | - 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 |
| 20) 노동쟁의의 정의 문제 | 제2조제4호 | - 권리분쟁 미포함 |

| 쟁점사항 | 관련조항 | 합의내용 |
|------------------------------|-----------------|--|
| 20) 노동쟁의의 정의 문제 | 제2조제4호 | - 권리분쟁 미포함 |
| 21)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직급 및 공익위원 자격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9조 | - 중노위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함 - 공익위원 자격기준 - 중노위 교수 5년이상 → 부교수 5년이상 - 지노위 부교수 3년이상 → 지노위 부교수 5년이상 |
| 22) 쟁의행위의 제한 | 제38조제1항 | - [기타 세력] → 삭제 |
| 2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제32조제1항 | -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24) 방위산업체의 범위 | 제41조제2항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위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무원 및 교원 문제 | | 계속 연구 검토하기로 함 |

* 합의 조항은 <참고자료 1>을 참조

* 「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 · 제2호(45면) · 제5호(50면) · 제6호(76면) · 제7호(61면) · 제8호(78면) · 제9호(94면) · 제12호(79면) · 제94-1호(57~58면) · 제94-2호(89면) · 제94-3호(93면) · 제94-5호(99~100면) · 제94-6호(86~87면) · 제95-1호(85~86면) · 제96-2호(40~42면)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견

■ 산업재해보험의 민영화

- 보험 의무가입 규정은 유지하되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민간 보험사도 산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재정경제원, 한겨레 97.1.10, 27면).
- 산재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적정 보상이 어렵고, 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사업의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포기해야 하며, 현행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으나,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재해가 많은 기업에 대한 보험가입 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노동부, 한겨레 97.1.10, 27면).
-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직업생활·사회복귀, 형사책임 담보 같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인 바, 민간에 이양되면 사회보장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 국민의 비용이 증가할 것임(박홍섭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한겨레 97.1.10, 27면).
- ①현재까지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산재보험의 민영화 추진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보험회사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②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산재발생률과 완전 정비례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경우 산재빈발 업

『외국인근로
자고용및보
호에관한법
률(가칭)』
제정의견

체는 보험료가 크게 높아져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③민간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처럼 치료와 보상에만 치우친 공산이 크므로, 민영화의 경우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산재 종합관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한겨레신문 기획·연재, 97.1.15, 14면).

- 중국조선족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 ①법무부장관의 훈령으로 특정부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 '산업기술 연수제도'가 중국 조선족 동포 사기사건의 진원이 되고 있는 바, 최소한 국가간 쌍무협정에 의거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②'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
③정부내 해외동포를 위한 부서를 설치하여 조선족 동포 사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동포정책을 마련하여야 함(김해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어찌할 것인가! 무너져 내리는 조선족 동포사회」 중국조선족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재중동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 주최 97.1.29).
 -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연수협력단이 송출업체·연수업체 선정을 독점함으로써 운용의 비효율과 함께,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는 바, 정부가 허가하는 복수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고, 송출업무도 국가기관 또는 상대국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수행되도록 함. 송출업무상의 인력브로커 개입의 차단장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함(방용석 국민회의 의원,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화 노력」 중국조선족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재중동포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 주최,

97.1.29).

※ 「입법의견조사」 제95-1호(87~88면) · 제95-2호(93면) · 제95-3호(90~91면) · 제95-4호(72~73면) · 제96-1호(29면) · 제96-2호(43~44면) · 제96-3호(43면) 참조

재정 · 경제

강제성 채권 제도관련 입 법의견

■ 강제성 채권제도 폐지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와 관련, 구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구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강제성 채권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발행규모를 줄이고 발행금리를 최소한 1년만기정기예금 등 공금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소화방식도 강제소화가 아닌 인수 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매입의무자를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인허가나 등기, 등록의 경우는 매입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함(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 97.1.20, 11면).

『규제개혁기 본법(가칭)』 제정의견

■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설치

- 행정부가 소관하던 규제개혁은 행정관서의 자의적 규제 근거가 되는 부령, 시행규칙, 세칙, 내규 등 하위 법령 가운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제개혁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강력한 규제개혁 집행기구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기구의 설치, 권한,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도록 함(중앙일보 해설 97.1.6, 3면).

- ① 강력한 규제완화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하는 '규제 심사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국회내 '규제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규제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감독·지원하도록 함. ② 규제법령의 신설시 국무회의 상정전에 규제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필 하여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부령도 발동될 수 없도록 함. ③ '규제일몰제'를 신설하여 유효기간을 규제 도입 당시에 미리 설정하고, 규제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도 5년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함(신한국당, 중앙 97.1.21, 27면).

※ 「입법의견조사」 제96-2호(45~46면) 참조

금융개혁관 련 입법의견

■ 여신전문금융기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① 업무영역의 통폐합을 추진중인 리스, 할부금융,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신금지, 자산 건전성, 동일인 대출규제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업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② 『여신전문금융기관에 관한 법률(가칭)』을 신속히 제정하고, ③ 인가 제인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4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설을 자유화하되 업무영역의 범위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차등적용하며, ④ 창업투자나 팩토링 등도 『여신전문금융기관에 관한 법률(가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재정경제원, 문화 97.1. 10, 1면).

■ 한국은행독립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통화관리는 총통화(현금통화요구불 예금, 저축성예금)는 한국은행에서 신탁계정 및 투자신탁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여 혼선을 빚어왔고, 재정경제원의 제2금융권 관할과 은행감독원을 통한 일반은행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중앙

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금융정책을 통제하여 부실여신의 양산과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온 바, 중앙은행의 독립을 전제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일관성있는 통화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시민의 신문 해설, 97.1.20, 6면).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 재벌의 보험·증권사 소유, 은행지분의 소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과 같은 소매여신기관의 운영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통한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초래하는 바,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지배 방지 방안이 요망됨(시민의 신문 해설, 97.1.20, 6면).
- ①금융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②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통화공급의 체제를 구축하며, ③금융기관의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분리, 전문경영체제 도입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도록 함(이필상 고려대학교, 시민의 신문 97.1.20, 6면).

『금융기관의
합병및전환
에관한법률
시행령』 개
정안

■ 부실금융 강제 합병대상 확대

경영의 부실로 인한 강제 합병·전환 조치 대상에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부실여부의 판정요건중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는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없이는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록 순채무가 늘어나는 상태로 함. 신설될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운용할 증권관리위원회를 추가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은 해당 기관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거나 주주라도 해당 금융기관 주식의 5%(일반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1%) 이하를 가진 사람(기관)으로 하며, 대기업이 계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데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주식소유의 목적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원, 중앙 97.2.10, 26면).

**기업문화혁
신을 위한
입법의견**

- 접대비 관련세제 개선방안
 - 기업이 제품의 품질·가격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보다는 뇌물이나 로비활동 등과 같은 접대를 통한 불공정경쟁의 관행을 형성하고, 접대비 지출규모가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여 항락산업과 사치성 서비스업의 육성을 조장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방안으로 ①중소기업 5년에 걸쳐서 손금산입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전액 손금부인하는 방안, ②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정한 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손금으로 인정된 접대비 중에서도 절반만 손금산입하는 방안이 있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①1인당 접대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여 한도액 이내의 접대비만 손금산입하고, ②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점과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등에서의 접대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③접대비 지출명세서에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 직책은 물론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명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의 비율을 우선 10~15% 정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100%로 확대하도록 함(재정경제원·한국조세연구원, 접대비 관련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한겨레 97.1.22, 9면).
 - 지나친 손금인정한도의 축소는 변칙회계처리를 유발하게 되는 바, 세법상 한도보다 전반적인 사회여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김종인 비철금속 협동조합 연합회장, 재정경제원·한국조세연구원, 접대비 관련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문

화 97.1.11, 12면).

『기업부담금
에관한특별
법(가칭)』
제정의견

■ 준조세 감소

준조세는 그 부과의 근거가 각 부처의 개별법으로 규정되고, 부담률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국회 예·결산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의 통제가 어려운 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준조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법에 우선할 수 있는 『기업부담금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모든 부담금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원, 국민 97.2.6, 11면).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통신다단계판매의 법적용 여부

- 다단계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그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바, 통신서비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휴대폰 구입과 서비스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행 패키지 형태의 판매에도 법적용이 가능함(통상산업부, 중앙 96.12.30, 34면).
 - 통신서비스 가입 유치 자체는 상품·서비스의 판매와는 구별되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공중전화카드와 같은 통신서비스가 재정경제원에 의하여 상품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다단계 판매는 물론 지정된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권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법』의 적용대상이 됨(정보통신부, 중앙 96.12.30, 34면).
- * 「입법의견조사」 제1호(48~49면) · 제8호(92면) · 제94-3호(100~101면) · 제94-4호(85~86면) · 제95-4호(77면) · 제96-2호(53면) 참조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의견

■ 금융채발행 불허

시중은행에 대하여서도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회사채발행이 어려워지고 불황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실세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금융시장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종전처럼 시중은행들에 대하여 금융채발행을 계속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정경제원, 한국경제 96.12.30, 9면).

※ 「입법의견조사」 제95-1호(91면) 참조

토지세제관
련 입법의견

■ 건물분 재산세 폐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답이 다른데도 전국에 산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자 주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는 바, 이의 폐지가 요망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건물가치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있어서, 건물에 재산세를 매기면 건물공급의 축소 및 임대료의 상승을 통하여 대부분 세입자에게 전가 되기 때문에 소위 '응능주의'에 적합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근로소득과 분리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임 (「토지세의 제문제들」 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 세계 97.1.6, 5면).

농림·해양

『선원법』
개정의견

■ 선원 '수장제' 폐지 등

- '선장은 선박의 항해중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는 수장할 수 있다'고 한 『선원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선원 최저연령을 15세에서 16세로 높이며, '선

원노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당한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해양수산부, 조선 97.1.10, 12면).

- 선주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5백t급 이상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강제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승선한 선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던 것을 8개월 승선시 4개월 이내 유급 휴가를 주도록 개정함(해양수산부, 경향 97.1.10, 8면).

『어장정비정
화특별법(가
칭)』 제정
의견

■ 환경친화적 어업의 지원

생산위주의 연근해 어업정책 및 환경의 개선·보전과 함께 부가가치의 제고를 위한 어장 정비·정화사업을 제도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어업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해양수산부, 한국경제 96.12.25, 30면).

『어촌개발촉
진법(가칭)』
제정의견

■ 어촌지역개발 지원

현행 『농어촌정비법』 등이 농촌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어촌의 휴양, 관광단지조성을 지원하는 『어촌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어민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어촌개발의 일환으로 해안의 어촌을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해양수산부, 97.2.12, 46면).

『해운법시행
규칙』 개정
의견

■ 해기관리사 자격기준 완화

해운업체와 선박관리업체의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하여 해기관리사의 자격기준을 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험합격자가 아니

더라도 2년이상 승선경험이 있는 선장 기관장에게 주어지는 해기관리사 시험응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고용하여도 무방하도록 완화함. 해기관리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현재 매년 한차례 실시하고 있는 해기관리사 자격시험을 금년부터는 해마다 2~3회 실시하도록 함(해양수산부, 한국경제 97.2.5, 47면).

『해양안전기
본법(가칭)』
제정의견

■ 해양안전확립을 위한 법령제정

해양안전선진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안전에 관련된 정부와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해양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해양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안전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선박안전관리가 우수한 해운회사에는 선박건조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며, 안전점검을 1~2년 가량 면제하는 '블루마크제'를 도입하도록 함(해양수산부, 세계 97.1.9, 2면).

건설·교통

『그린벨트보
상법(가칭)』
제정의견

■ 재산권 침해의 보상 법정화

그린벨트 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현행『도시계획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는 바, 보상규정의 신설이나 보상법률의 제정이 요망됨(이석연 변호사, 국민 97.1.10, 31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1~52면) 참조

과학기술 · 정보통신

가상대학활

■ 가상대학활성화를 위한 법제마련

성화관련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킨 가상대학 설립의 문제는 ①『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대학의 성격과 그 성격이 상이한 바, 이의 조율을 위하여 관련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을 보완하고, ②가상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상대학설립을위한특별법(가칭)』의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허운나 한양대교수, 「현행제도로 가상대학은 가능한가」,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세미나; 중앙 97.1.31, 27면).

『전기통신사

■ 통신의 자유 보장

업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신청이나 전의가 있을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취급 거부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장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무효임.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취급 거부명령권 자체도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불온통신에 대한 애매한 규정과 맞물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겨레 97.1.18, 2면).

개정의견

- '불온통신'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맡기려 함은 불온통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통신이 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구실로 이용될 뿐이며, 국내 통신망은 감청하여 제한조치를 하고, 인

터넷을 대상으로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방지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됨(김영환 국민회의의원, 한겨레 97.2.3, 9면).

환경

『상수원수질 개선특별법 (가칭)』 제정 의견

■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

위천공단 지정과 관련하여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발족하려는 계획은 투자액의 57.3%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감안시 실현성이 없는 바, 선수질개선, 후공단조성의 낙동강특성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당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및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문정수 부산시장, 경향 97.1.10, 1면).

■ 4대강 오염물질 총량 규제

① 주요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별 오염물질 총량제'를 도입하고, 담비로 인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의 자연을 예방하고자 환경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국가수용이 가능하도록 함. ②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질개선·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석유가스·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전액을 전입하여 사용하며, ③ 수계별로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수질감시평가단'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사업의 정기적인 감시·평가를 하도록 하고, ④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환경부, 동아 96.2.21, 2면).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119면) 참조

보건 · 복지

『국민건강보호법(가칭)』 제정 의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설립

① 다원화된 현행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저소득 국민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②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통합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자는 물론 『범죄피해자구조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의 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며, ③ 피보험자에 대한 상병수당, 건강진단과 사전진찰, 예방접종 등을 포함하는 예방급여를 신설함(당정, 경향 97.1.13, 2면).

복지시설설립관련 입법 의견

■ 개인 · 기업의 설립 허용

① 현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에 한하여 허가제로 운영하여 온 복지시설의 설립 · 운영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회봉사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재력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② 수용대상을 현재의 생활보호자에서 월 소득 22만원 이하의 자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으로까지 확대하며, ③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이사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하향조정함(보건복지부, 중앙 97.2.15, 21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의견

■ 유사의료용구 수입 · 판매 금지

성기능강화보조기구, 살빼는 기구 등 유사 의료용구의 제조 · 수입 · 판매,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 · 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제조 · 수입 ·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쳐벌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무자격 약사

를 고용하여 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15일간의 약국 업무정지와 업주에 대하여 1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하며, 모든 한약재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보건복지부, 동아 96.12.30, 39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98면)·제10호(98~99면)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가칭)』 제정 의견

■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행복접근권

장애인·노인은 물론 임산부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 생활이 어렵고, 신체이동,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된 이동약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접근·추구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이행부과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명문화하며,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편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당정, 경향 97.1.3, 2면).

법원·법무

『검찰청법』 개정 의견

■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법률상 단독관청으로 전국적으로 이는 균형있는 수사망의 확보로 수사효과를 높이고,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나, 수사망의 확보는 법률이 아닌 업무지침으로 효과적인 수사는 상호공조로 가능하며, ②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형의 집행은 검사 고유의 업무인데, 검사는 법무부 소속 행정 공무원이면서 소송법상의 지위는 사법기관인 바, 제7조제1항의 법적용은 삭제되어야 하며, ③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승계권'과 다른 검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 이전권'의 권한으로 상명하복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한 바, 권

한 행사의 이유·직무수행중단검사의 의견 기재로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며, ④검찰총장의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민주적 인사를 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신장하도록 함. ⑤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철저히 보장하고, 직무수행 중단 이후는 공직을 제한하고, ⑥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강화하여 법무부장관, 대통령과 함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권, 임명권을 갖도록 하며, ⑦'검사윤리강령(가칭)'을 제정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고, 부정한 청탁의 거절,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적용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평등한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퇴임후의 전관예우는 제외함(차병직 변호사, 「검찰개혁의 여섯가지 과제 -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중립성·독립성 확보」, 참여사회 97.1·2, 38~41면).

※ 「입법의견조사」 제5호(63면) · 제94-5호(129면) · 제94-6호(115면) · 제96-3호(77면) 참조

『국가안전기
획부법』 개
정의견

※ II. 주요쟁점 참조

※ 「입법의견조사」 제4호(44~45면) · 제6호(102~103면) 참조

『부패방지법
(가칭)』 제
정의견

■ 돈세탁 규제·부정행위 처벌 강화

-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력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공소시효를 늘리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하여야 함(이은영 한국외대교수, 부정부패근절토론회, 참여연대·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한겨례 97.2.20, 5면).
-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관하여 『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복무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등에 산만하게 규정된 현행 법으로는 공직자부정을 포착하기 불가능한 바, 『공직자윤리

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공익정보제공자 등을 보호하며, 돈 세탁을 규제하고 부정부패의 적발과 처벌,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의 필요성 등을 요강으로 하는 『부패방지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함(강경근 충실대교수, 부정부패근절토론회, 참여연대·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한겨레 97.2.20, 5면).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83~84면) · 제95-1호(84면) · 제96-2호(24면) · 제96-3호(19면) 참조

『형법』관련

입법의견

■ 국회의원의 신분과 수뢰죄

『형법』 제129조 이하의 '수뢰죄' 조항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판례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그 직무의 공정이 특히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뢰행위가 『형법』상 처벌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당비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이 아닌 돈을 개인적으로 수수하였다면 이는 뇌물로 간주됨. 국회의원의 경우 사실상 언제든지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가 즉시 발현되지 않는다면 수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임(이석연 변호사, 동아 97.2.2, 2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 · 제94-6호(120면) · 제95-1호(103면) · 제95-3호(107면) · 제96-1호(51면) · 제96-3호(87~88면)

참조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체포영장 규정 논란

현행의 체포영장제도는 범죄혐의는 물론 출석요구 불응의 두 가지 요건구비시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①범죄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고,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일단 풀어주어야 하며, ②일

일이 별도의 구인장을 발부하고 혐의자를 출석시킨 뒤 영장을 심사하여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발부를 어렵게 하는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③혐의자의 도주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 중 '사유가 있고' 부분을 '사유가 있거나'로 고쳐서 체포영장을 쉽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함(한국 97. 1.20, 35면).

※ 「입법의견조사」 제12호(110면) · 제13호(105~106면) · 제94-1호(85면) · 제92-2호(116~117면) · 제94-5호(131~132면) · 제94-6호(120~121면) · 제95-2호(127~128면) · 제95-3호(108면) · 제96-3호(89~90면) 참조

〈참고자료 1〉

노동관계법 여·야 합의안(97년 3월 13일 공포)

[합의조항]

- ※ 여야합의안으로 통과된 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임.
- ※ 법률명 미표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임.
- ※ 노동관계법의 개정논의 경과 및 관련 입법의견은 III. 분야별 입법의견 동향 편의 노동부분 참조.
- ※ 현행(안)은 96년 12월 26일 통과안임.

1)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및 자구정리

| 현 행 | 합 의 안 |
|--|---|
|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생략) 3. 가.~라.(생략) 마.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생략) | 제2조 (정의)(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 가.~라.(현행과 같음)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2) 노조임원 겸직 금지

| 현 행 | 합 의 안 |
|---|--|
| 제23조 (임원의 선거등) ①~②(생략) ③노동조합의 임원은 2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23조 (임원의 선거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삭제) |

3) 쟁의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1차례 연장가능)

| 현 행 | 합 의 안 |
|--|--|
| 제54조 (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5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 제54조 (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연차유급휴가 상한선 폐지(근로기준법 제48조)

| 현 행 | 합 의 안 |
|--|--|
|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 |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 |

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⑤(생략)

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⑤(현행과 같음)

5) 회의소집권자 지명기한 명시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18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p> <p>①~②(생략)</p> <p>③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p> <p>④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p> | <p>제18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p> <p>④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p> |

6) 노동조합의 지도·관리·통제책임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p> <p>①~②(생략)</p> <p>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통제하여야 한다.</p> | <p>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p> |

7) 서류보존년수 단축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14조 (서류조치등)</p> <p>①(생략)</p> <p>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 <p>제14조 (서류조치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

8) 행정관청 자료제출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재정장부·회의록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진정·고발 등이 있거나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노동조합의 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에 분규가 발생하여 조정·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p>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

| | |
|--|--|
| <p>3.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제9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생략)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p>4.(생략)</p> | <p>제9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p>(삭제) ※ 대체근로법위 조정에 따른 정리</p> <p>3.(현행과 같음)</p> |
|--|--|

9) 복수노조

| 현 행 | 합 의 안 |
|--|---|
| <p>부칙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p> <p>②~③(생략)</p> | <p>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

10)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p> <p>①~②(생략)</p> <p>③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 <p>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

11) 대체근로 : 사업내 허용, 신규하도급 금지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사업내에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으며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와 채용 또는 대체할 인원·업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 <p>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현행과 같음)</p> <p>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p> |

| | |
|---|---|
| <p>제91조(별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생략) | <p>제91조(별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현행과 같음) |
|---|---|

12) 무노동무임금(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문제)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 <p>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
| <p>제90조 (별 칙)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p>제90조 (별 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13) 변형(탄력적) 근로시간제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42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p> <p>①(2주단위 48시간제)</p> <p>②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업무단위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일에 제42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 4.(생략)</p> <p>③~⑤</p> | <p>제42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p> <p>①(현행과 같음)</p> <p>②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제4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특정주에 제4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2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 4.(현행과 같음)</p> <p>③~⑤</p> |

14) 정리해고(고용조정)제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27조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p> <p>①(생략)</p> <p>②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 · 합병 · 인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p> | <p>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p> <p>〈삭 제〉</p> |

| | |
|--|---|
| <p>③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④일정규모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신설〉</p> | <p>②(현행 ③과 같음)</p> <p>〈삭제〉</p> |
| <p>⑤사용자가 제1항·제3항 및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27조의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 ①~②(생략)</p> | <p>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삭제〉</p> |

15)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①~②(생략)</p> <p>부칙 제2조 (적용시한) 제71조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p> | <p>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①~②(현행과 같음)</p> <p>부칙 제2조 (적용시한) 제71조제2항 규정 중 제1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 및 제4호의 은행사업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

16)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 지급금지, 5년간 시행 유예(부칙 제6조)

| 현 행 | 합 의 안 |
|--|--|
| <p>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한다.</p> | <p>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 규정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p>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문제(제2조제3호라목)

→현행유지(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

18) 노동쟁의의 정의문제(제2조제4호)

→현행유지(이익분쟁에 한함, 권리분쟁 미포함)

19)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직급 및 공익위원 자격 문제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9조

| 현 행 | 합 의 안 |
|---|--|
| <p>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등) ①(생략) 1. 심판담당공익위원 가. 법학·경영학·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다.(생략) <신설></p> | <p>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등) ①(현행과 같음) 1. 심판담당공익위원 가. 법학·경영학·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다.(현행과 같음) 라.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p> |

2. 조정담당공익위원

- 가.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다.(생략)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 한다.

1. 심판담당공익위원

- 가. 법학·경영학·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라.(생략)
<신설>

2. 조정담당공익위원

- 가.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나.~라.(생략)

2. 조정담당공익위원

- 가.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다.(현행과 같음)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 한다.

1. 심판담당공익위원

- 가. 법학·경영학·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라.(현행과 같음)
마.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조정담당공익위원

- 가.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나.~라.(현행과 같음)

| | |
|-------------------------------|---|
| 〈신 설〉 |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 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 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 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자 |
| ③(생략) | ③(현행과 같음) |
| 제9조(위원장) | 제9조 (위원장) |
| ①~②(생략) | ①~②(현행과 같음) |
|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차관급정 무직으로 한다. |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 로 한다. |
| ④(생략) | ④(현행과 같음) |

20) 쟁의행위의 제한

| 현 행 | 합 의 안 |
|---|--|
|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 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 기타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생략) |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 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는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 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 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현행과 같음) |

2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현 행 | 합 의 안 |
|--|--|
|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 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 을 정할 수 없다. ②~③(생략) |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

22)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범위

| 현 행 | 합 의 안 |
|--|--|
|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생략) ②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지침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또는 전력, 용수, 부자재 공급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현행과 같음) ②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지침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7.3.10, 국회)

〈참고자료 2〉

1997년도 정부 입법계획

재정경제원(9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조세감면규제법(개) |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한다. 중소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7월)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 |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부진으로 인한 예탁 축소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없이 국·공채인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5월)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 | 정부투자기관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경영성과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 기관별 생산성 향상 결과를 평가, 상여금에 반영한다.(5월) |
| 공기업경영효율화및민영화에관한특례법(제) | 전문경영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선임 및 퇴임요건을 엄격히 하고, 경영 및 인사상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5월) |
| 한국수출입은행법(개) | 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정책금융인 연불금융자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출입신용업무의 취급근거를 마련한다.(10월) |
| 한국주택은행법(개) | 은행을 민영화, 일반은행으로 전환한다.(5월) |
| 보험업법(개) | 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한다.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별화한다.(6월) |
| 여신전문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 |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제도를 도입한다.(6월)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2종 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한다.(5월) |

통일원(1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통일교육법 (제) |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통일문제 및 교육전문가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 통일원장관산하에 통일교육본부를 두고 각 시·도에 통일교육지원사무국을 설치한다.(4월) |

내무부(6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주민등록법 (개) |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바꾸고, 주민등록사항말고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감·지문·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 가입·의료보호 관련사항 등 7개 증명을 이 카드에 통합한다.(5월) |
| 인감증명법 (개)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카드에 인감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5월) |
| 지방공무원법 (개) |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를 도입한다.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를 도입한다.(6월) |
| 지방세법(개)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을 입법화한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시정할 수 있는 과세적부 심사청구제도를 신설 한다.(5월) |
| 도로교통법 (개) | 주민카드에 운전면허를 통합한다.(7월) |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개) |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기금을 통합한다.(9월) |

법무부(3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각급법원의설 치와관할구역 에관한법률 (개) | 포항지원의 개원시기를 조정하고, 울산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바꾼다.(3월) |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등에관 한법률(개) | 관세법의 개정으로 관세법처벌제도가 개편되고 처벌규정의 법 정형이 대폭 하향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다.(5월) |
| 민사소송등인 지법(개) | 제1심 인지액 산출방식을 현행 정률제에서 4단계로 나누어 역 진제로 개선한다.(9월) |

국방부(3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국방과학연구 소법(개) | 정부 추진의 민·군겸용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6월) |
| 해군기지법 (개) | 해군기지구역 중 일정한 구역에서의 협의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9월) |
| 군용항공기지 법(개)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 표면 높이 12m를 넘지 않는 도로와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9월) |

교육부(9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교육기본법 (제) | 교육개혁의 기본정신인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원·국가 등 교육당사자의 지위와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5월) |

| | |
|--------------------|--|
| 초·중등교육법(제) | 현행 교육법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관련조항을 분리한다.(5월) |
| 고등교육법(제) | 현행 교육법에서 고등교육관련조항을 분리한다.(5월) |
| 평생학습법(제) | 학점은행제·직업능력인증제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학습결과를 인정한다.(5월) |
| 직업인력개발사업법(제) | 교육훈련산업촉진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한다.(9월)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제) | 평가원의 설립근거·재원을 규정한다.(5월) |
| 교육분쟁조정 등에 관한특별법(제) | 교육부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5월) |
| 사립학교법(개) |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학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킬수 있도록 한다.(6월) |
| 특수교육진흥법(개)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아 등에 대한 교육사업이 부진할 때 교육장관이 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7월) |

문화체육부(4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 | 학예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9월) |
| 예술의전당법(제) | 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9월)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 | 대중골프장 병설 적용기한을 폐지한다.(11월) |
| 문화재보호법(개) | 매장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훼손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0월) |

농림부(7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환경농업육성법(제) | 환경농업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농업농가를 지원한다. (9월) |
| 양곡관리법(개) | 국채의 통합발행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이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7월) |
| 축산법(개) | 양돈업등록제·허가제와 양계업등록제를 폐지한다. (7월) |
| 축산물위생처리법(개) | 수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외에 수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9월) |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개) | 진도군수는 진도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반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7월) |
| 조수보호및수령에관한법률(개) | 조수의 번식기간에 보호구역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밀렵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7월) |
| 잠업법(개) | 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한다. (5월) |

통상산업부(11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신고제로, 체형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9월)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 | 법정자본금을 1천5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린다. (9월)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개) |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9월) |
| 전기공사업법(개) | 전기공사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10월)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 | 불요불급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 (10월) |

| | |
|---------------------------|--|
| 산업표준화법 (개) | KS표시허가 (승인) 업무를民間에 넘긴다.(9월) |
| 한국종합화학 공업주식회사 법(폐지) | 1997년 민영화 대상기업이 됨에 따라 법을 폐지한다.(9월) |
| 특허법(개) |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벌금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인다.(국회제출완료) |
| 실용신안법 (개) | 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을 때 벌금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국회제출완료) |
| 의장법(개) | 다의장 1출원제도를 도입한다.(9월) |
| 상표법(개) | 국제상표분류제도(NICE)를 도입한다.(9월) |

정보통신부(6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전기통신사업 법(개) | 통신사업 참여에 관한 외국인 등의 지분제한을 완화한다. 음성 재판매, 국제콜백, 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서비스의 관련정책을 수립한다.(7월) |
|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개) | 가정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프로그램복제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7월) |
| 전기통신공 사업법(개) | 통신공사업의 진입제한과 통신기술자격자보유 제한기준을 완화 한다.(8월) |
| 전파법(개) | 외국인이 대표자인 법인 등에 대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한다. (9월) |
| 우편법(개) | 우편이용고객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9월) |
| 체신보험특별 회계법(개) | 체신보험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9월) |

환경부(10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먹는물관리법 (개) |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용천수 등 샘물을 개발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출완료) |
| 습지보전법 (제) |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한다.(3월) |
| 호소수질관리법 (제) |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다.(3월) |
|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 |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 4 단계로 구분·관리하고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한다.(3월) |
| 자연환경보전법 (개) |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가져올 외래 동·식물을 지정·고시하고 수입을 규제한다.(4월) |
| 수도법(개)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0년마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4월) |
| 수질환경보전법 (개) | 폐수처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4월) |
| 대기환경보전법 (개)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5월)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 | 처리시설입지선정절차를 개선한다.(5월) |
| 폐기물의국기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개) |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한다.(5월) |

보건복지부(13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사회복지사업법(개) | 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개인·단체로 확대한다.(5월) |
| 생활보호법(개) | 생활보호대상 등의 자활공동체 구성과 그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재단을 설립한다.(6월) |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개) | 묘지 단위면적으로 축소하고, 묘지 사용기간을 설정한다.(6월) |
| 식품안전에관한법률(제) | 식품수거·검사책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한다.(9월) |
| 식품접객위생에관한법(제) | 퇴폐영업 등 풍속사범 단속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폐영업·미성년자 출입단속업무는 경찰청에, 위생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다.(9월)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 | 장기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장기를 매매했을 때 처벌규정을 마련한다.(6월) |
| 의료분쟁조정법(제) |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7월) |
| 마약법(개) |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마약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한다.(7월)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개) | 향정신성원료를 사용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고로 완화한다.(7월) |
| 대마관리법(개) | 대마취급자 자격 상실은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7월) |
| 국민연금법(개) |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여성에 대하여 연금수급권을 인정한다.(6월)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 | 보건의료정책진흥센터를 둔다.(6월) |
| 한국한의학연구소법(개) | 한의학연구소의 이름을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바꾼다.(7월) |

노동부(6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법(제) | 외국인고용희망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7월) |
| 근로자파견법(제) |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6월) |
| 기능대학법(개) | 직업훈련법인 등도 기능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주도록 한다.(6월) |
|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법(개) | 공단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한다.(6월) |
| 직업훈련기본법(개) | 직업능력개발의 목적·계획수립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근로자의 책무를 명시한다.(10월) |
|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 |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자금·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시설설치 지원 및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한다.(5월) |

건설교통부(10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자동차운송사업법(개) | 신규등록제한을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6월) |
| 한국도로공사법(개) |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7월) |
| 대한주택공사법(개) | 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린다.(7월) |
| 철도소운송업법(개) | 사업종별을 일원화한다.(7월) |

| | |
|-----------------------------|---|
| 댐건설및지원 에관한법률 (제) | 수몰민에 대한 지원은 다목적댐 및 용수용댐에 적용한다.(8월) |
| 교통안전공단 법(개) |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에 자동차검사시행기관을 추가 한다.(8월) |
| 토지관리및지 역균형개발특 별회계법(개) | 수급조정용 토지매입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다.(6월) |
| 도로법(개) | 도로관련 5개법을 1개의 법으로 통합한다.(9월) |
| 도시계획법 (개) |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시·도에 넘긴다.(10월) |
| 도시개발법 (개) | 적용대상을 도시계획구역과 주변지역으로 한다.(10월) |

해양수산부(9건)

| 법 률 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한국해양수산 개발원법(제) | 개발원을 법인으로 한다.(완료) |
| 연안역관리법 (제) | 연안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및 용도지역 제를 도입 한다.(7월) |
| 수로업무법 (개) | 해양조사 정보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조항을 명시한다. (5월) |
| 한국어업기술 훈련소법(개) | 상선선원은 「한국해기연수원」, 어선선원은 「한국어업기술훈련소」로 선원재교육기관을 이원화한다.(5월) |
| 선박안전법 (개) | 선박검사의 위탁근거를 마련한다.(6월) |
| 어항법(개) |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민간인도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6월) |
| 선박직원법 (개) | 해기사면허증을 면허증과 승무자격증으로 나눈다.(5월) |
| 선원법(개) |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을 주5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다. (6월) |
| 한국컨테이너 부두관리공단 법(개) | 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재정립한다.(7월) |

총무처(1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국가공무원법 (개) |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등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한다. |

공보처(2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 법률(개) |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8월) |
| 광고진흥법 (제) | 광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광고진흥원을 설립하고 광고진흥기금을 조성한다.(9월) |

법제처(1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행정심판법 (개) |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근거가 되는 명령·처분 등이 위법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7월) |

국가보훈처(1건)

| 법률명 | 입법안 요지 및 국회제출시기 |
|----------------------------------|---|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지원등 에관한법률 (개) |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역학조사결과 새롭게 후유증으로 규명된 질병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10월) |

(서울신문 97.3.19, 7면)

〈주요항목색인〉

(ㄱ)

| | |
|------------------------|----|
| 가상대학활성화를 위한 법제마련 | 43 |
| 강제성 채권제도 폐지 | 35 |
| 개인·기업의 복지시설설립 허용 | 45 |
| 전물분 재산세 폐지 | 40 |
| 검사동일체의 원칙 | 46 |
| 교육당사자의 참여방안 마련 등 | 23 |
|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 18 |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설립 | 45 |
| 국회의원의 신분과 수뢰죄 | 48 |
|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설치 | 35 |
| 금융채발행 불허 | 40 |
| 기탁금제도 개선 | 18 |

(ㄴ)

| | |
|--|----|
| 노동관계법 3당합의 요지(97년 3월 10일) | 28 |
| 노동관계법 개정논의 경과 | 26 |
| 노동관계법 정기국회 통과 법률(96년 12월 26일) 관련 | 26 |
| 노동관계법 야당 단일안 | 28 |
| 노조전임자 임금지불 | 27 |

(ㄷ)

| | |
|-------------------------|----|
| 당비제도 개선 | 19 |
| 대체근로의 허용 | 27 |
| 도산기업 체불 대체지급 | 25 |
| 돈세탁 규제·부정행위 처벌 강화 | 47 |

(ㅁ)

| | |
|---------------|----|
| 문화재보호관련제도의 보강 | 21 |
| 민간박물관 지원 | 20 |
| 민주노총의 독소조항 분석 | 27 |

(ㅂ)

| | |
|-----------------|----|
| 방송법안의 표류 | 22 |
| 방송위원회의 권한 | 23 |
| 벌칙조항 강화 | 19 |
| 변형근로시간제 | 26 |
| 부실금융 강제 합병대상 확대 | 37 |

(ㅅ)

| | |
|--------------------|----|
| 4대강 오염물질 총량 규제 | 44 |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 37 |
| 산업재해보험의 민영화 | 33 |
|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 | 44 |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 19 |
| 선원 '수장제' 폐지 등 | 40 |
| 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 등 | 24 |

(ㅇ)

| | |
|----------------------------|----|
| 안기부관련법제의 정비문제 | 13 |
| 안기부법의 개정경과 | 11 |
| 안기부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에 관한 문제 | 16 |
| 안기부의 수사권에 관한 문제 | 13 |
| 어촌지역개발 지원 | 41 |
| 여신전문금융기관에관한법률(가칭) 제정 | 36 |
| 영화의 등급외 판정 | 21 |
| 예술의전당의 경영상 자율 | 22 |

| | |
|-----------------------|----|
| 위성방송 참여범위 | 23 |
| 유사의료용구 수입·판매 금지 | 45 |

(스)

| | |
|-------------------------|----|
|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행복접근권 | 46 |
| 재산권 침해의 보상 법정화 | 42 |
| 접대비 관련세제 개선방안 | 38 |
| 정리해고제 | 26 |
| 정액영수증제 폐지 | 18 |
| 정치자금실명제 실시 | 17 |
| 준조세 감소 | 39 |
| 중국조선족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 34 |

(츠)

| | |
|-----------------------|----|
| 체포영장 규정 논란 | 48 |
| 출산·휴직비용 사회분담 추진 | 25 |

(을)

| | |
|-----------------------|----|
| 통신다단계판매의 법적용 여부 | 39 |
| 통신의 자유 보장 | 43 |

(을)

| | |
|-----------------------|----|
| 한국은행독립 | 36 |
| 해기관리사 자격기준 완화 | 41 |
| 해양안전확립을 위한 법령제정 | 42 |
| 환경친화적 어업의 지원 | 41 |
| 효율적인 탈북자 지원 | 20 |
| 후원회제도 개선 | 18 |

입법의견조사 97-1 입법의견 동향분석

1997년 4월 25일 印刷
1997년 4월 30일 發行

發 行 人 朴 松 圭
發 行 處 **한국법제연구원**
印 刷 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1-190호

￦ 5,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21-5 93360